##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개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6551

발의연월일: 2022. 7. 20.

발 의 자:이개호·김병기·김승남

서삼석 · 서영교 · 신정훈

윤재갑 • 위성곤 • 김정호

홍성국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전통식품은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고유의 문화 유산이지만 국민 식생활의 다양화 및 현대화로 인하여 식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고 있으며 그 중요성과 계승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옅어지고 있는 상황임.

다양한 천연재료와 특유의 친환경 방식을 이용한 우리 전통식품산업 육성은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게 될 뿐만 아니라 농어업과의 연계성 강화를 통해 식품산업에서 우리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.

이에 따라 전통식품협회의 역량강화와 자립화를 통해 전통식품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자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자율적으로 전통식품 판로 확대, 품질향상 및 수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, 식품명인 자격제도에 대한 사후점검제도를 마련함으로서 우리 전통식 품산업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(안 제14조제2항·제14조의3 및 제18조의2 신설 등). 법률 제 호

##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법률 제18532호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제2항제4호 중 "지정·취소"를 "지정·취소·해제"로 한다.

제1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사람은 우리 식품의계승·발전과 식품산업의 진흥에 이바지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품위 유지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법률 제18883호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14조제6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6. 「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」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
- 7. 제2항에 따른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

제14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한민국식품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

- 수 있다. 다만,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.
- 1. 사망한 경우
- 2. 국외로 이민을 가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
- 3. 본인이 지정 해제를 요청한 경우
-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제14조의3(관계기관 등의 협조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 찰청장에게 「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경찰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  -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-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제18조의2(전통식품 자조금의 적립지원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 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가 전통식품의 소비촉진, 판로확대, 대표브랜드 홍보, 조사연구 및 수출활성화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조금을 조성·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자조금의 조성방법, 보조금의 지급기준, 그 밖에

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법률 제18532호 식품산업진흥법	법률 제18532호 식품산업진흥법
일부개정법률	일부개정법률
제5조(식품산업진흥심의회 설치)	제5조(식품산업진흥심의회 설치)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	2
항을 심의한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대한민국식품명인의 <u>지정·취</u>	4 <u>지정·취</u>
소 및 표시에 관한 사항	<u>소·해제</u>
5. ~ 8. (생 략)	5. ~ 8. (현행과 같음)
③・④ (생 략)	③・④ (현행과 같음)
법률 제18883호 식품산업진흥법	법률 제18883호 식품산업진흥법
일부개정법률	일부개정법률
제14조(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	제14조(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
및 지원 등) ① (생 략)	및 지원 등) ①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②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
	명인으로 지정된 사람은 우리
	식품의 계승·발전과 식품산업
	의 진흥에 이바지하고 다른 사
	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
	력하여야 하며, 대한민국식품명
	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
	한다. 이 경우 품위 유지의 내
	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③ ~ ⑤ (생 략)
-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한 민국식품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 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 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 여야 한다.

1. ~ 5. (생 략) <u><신</u> 설>

<u><신 설></u>

<신 설>
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6
<u>,</u>
1. ~ 5. (현행과 같음)
6. 「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
한 법률」을 위반하여 벌금
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그
형이 확정된 경우
7. 제2항에 따른 품위 유지의무
를 위반한 경우
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한
민국식품명인이 다음 각 호의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
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
을 해제할 수 있다. 다만, 제1
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
하여야 한다.
<u>1. 사망한 경우</u>
2. 국외로 이민을 가거나 외국
국적을 취득한 경우
3. 본인이 지정 해제를 요청한

<u>⑦</u> ~ <u>⑩</u> (생 략)

<신 설>

<신 설>

경우

<u>⑧</u> ~ <u>⑩</u> (현행 제7항부터 제1 1항까지와 같음)

제14조의3(관계기관 등의 협조)
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4
조제1항 및 같은 조 제6항에
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
필요한 경우 경찰청장에게
「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」
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
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경찰
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
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4 조제1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계 기관 또 는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 제18조의2(전통식품 자조금의 적 립지원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 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립 된 단체가 전통식품의 소비촉 진, 판로확대, 대표브랜드 홍보,

조사연구 및 수출활성화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조금을 조 성·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 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자조금의 조성방법, 보조금의 지급기준,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